

의안번호	제2412호
의결 년 월 일	2026. . .

의결사항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1. 2.

기획감사실 심사필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412호
----------	--------

제출년월일 : 2026. 1. 2.
제출자 : 보은군수
(소관부서 : 경제정책실)

1. 제안이유

-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시장경제의 악화와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민생지원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안 제5조, 제6조)
- 신청 및 확인(안 제7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 인센티브(안 제9조)

3.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보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보은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보은군 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사회·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신청 및 확인)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시장경제의 악화와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현금)

3. 관련 조문

-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5년간 정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민생안정지원금	19,291	19,291				

다. 재원 조달 방안: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경제정책실장 안 진 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9,291					19,291
민생안정지원금	19,291					19,291
재원 조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291					19,29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